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에너지 관련 신사업 추가>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7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13.
3. 회 부 일 : 2024. 12. 1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석탄·LNG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과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조(사업) ① ----------. 1.·2. (현행과 같음) 2의2.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과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라 공사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도록 설립된 법인[1]으로,

1) 「한국전력공사법」

현행법 제13조제1항[2]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과 이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등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로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 등 다른 전기사업을 겸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3]됨.

이는 2001년에 전력산업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공사가 운영하던 발전부문을 한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 등으로 분리함에 따른 법적 조치였음.

그런데, 2022년 이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이를 전기소매요금에 전부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기판매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 및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2025년 4분기 기준 누적부채는 약 206조원, 누적적자는 약 21.2조원임.

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지난 기간 손실분을 전기요금에 완전히 반영해야 하나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공공요금[4]이어서 단기간에 인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 및

---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을 공사의 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공사가 전기판매사업 및 송·배전사업 외에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 외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면 공사의 수입원이 새로 창출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전력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아온 공사의 역량을 신사업 발굴 및 진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게 될 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배[5]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개정안은 조문에 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문언상 포함관계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예를 들어, 공사가 발굴한 신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공사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다른 공기업의 사업 범위 개정 사례[6]처럼 구체적인 사업영역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고,

개정안과 같이 공사가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신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다른 에너지 공기업의 목적 및 사업수행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7

6) 한국석유공사는 「한국석유공사법」 개정(2024.01.09. 시행)을 통해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추가하였고, 한국가스공사 또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2018.12.31. 시행)을 통해 사업 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한 바 있음.